

영상의학과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요건을 위한 논문에 관한 세칙

대한영상의학회 수련위원회 및 고시위원회 (2023년 제정, 2025년 4월 16일 개정)

제1조 (응시자격 요건)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련 기간 중 영상의학 관련 내용의 원저 1편 혹은 원저 외 논문 2편을 제 1저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제2조 (저자 인정 및 연구 기간)

① 원칙적으로 해당 전공의가 제 1저자이면서 본인 수련기관 지도전문의를 교신저자로 하는 논문을 인정한다. 단, 타 수련기관 지도전문의 또는 타과 전문의가 교신 저자인 경우 본인 수련기관 영상의학과 지도전문의가 공저자로 참여하여야 인정한다.

② 전공의가 공동 제 1저자인 경우

가. 타임상과 또는 타과(의학과 외) 저자와 공동으로 저술한 원저의 경우 1편으로 인정한다.

나. 영상의학과 소속 의사나 본인 수련기관 영상의학과 소속 비의사(공학박사 등)와 공동으로 저술한 원저의 경우 공동 제 1저자 수로 나눈 편 수만큼 인정한다(2명의 경우 0.5 편).

다. 원저 외 논문은 0.5편을 공동 제 1저자 수로 나눈 편 수만큼 인정한다(2명의 경우 0.25편).

③ 전공의 수련을 시작하고 전문의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연구, 작성, 제출, 게재승인 된 논문이어야 한다.

④ 그 이외의 사항은 수련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제3조 (인정 논문의 형식)

① 다음과 같은 형식의 논문을 전문의 자격 시험 요건을 위한 원저 또는 원저와 동등한 논문으로 인정한다.

가. 원저 (Original article)

나. 임상화보 (Pictorial essay)

다. 종설 (review article)

라. 대한영상의학회지 Case Series

② 위 ①항 이외의 논문은 원저 이외의 논문으로 간주한다.

③ 원저 이외의 논문으로 증례 보고(Case report)는 환자의 임상적 정보, 영상 검사, 고찰이 포함된 형식의 경우를 인정한다. 그 이외의 논문은 수련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제 4조 (인정 학술지) 다음과 같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전문의 자격시험 요건에 합당한 논문으로 인정한다.

① 국내 영상의학 관련 학술지: SCIE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한다

가. 대한영상의학회지

나. Korean Journal of Radiology (KJR)

다. Ultrasonography

라. Nuclear Medicine and Molecular Imaging

마. Investigative magnetic resonance imaging

② 기타 국내외 SCIE 등재 학술지.

부칙

1.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대한영상의학회 수련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이 세칙은 대한영상의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